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45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45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나19806(본소), 2017나19813(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가단1976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오인숙, 장호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B

판결 선고 2019. 11. 15.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나19806(본소), 2017나19813(반소)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7. 28. 20: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스타렉스'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 소재 국방대학원 사거리 교차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통과하여 직진 주행하였고, D도 E 카니발 승합차(이하 '카니발'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스타렉스와 카니발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고의 모 F이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 역시 좌측슬개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D에 대하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D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2222 판결). 검사가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D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노886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D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354 판결).

4) 한편, 피고 및 망인의 상속인들은 D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및 망인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8가합75473 판결). 피고 및 망인의 상속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D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카니발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의 스타렉스를 추돌한

사실, 피고의 스타렉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D의 카니발이 스타렉스를 추돌하는 후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 경위 및 D의 신호위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D의 책임비율을 20%로 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및 망인의 상속인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2. 선고 2010나103125 판결).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을 배척하되 원고의 치료비 공제 주장을 누락한 원심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58675 판결).

5)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충돌 순서)에 관하여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03125 판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D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카니발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의 스타렉스를 추돌한 사실, 피고의 스타렉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D의 카니발이 스타렉스를 추돌하는 후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책임비율을 'D 20%, 피고 80%'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30188 판결). 이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2015. 6. 2.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선행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책임비율 'D 20%, 피고 80%'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의 카니발이 피고의 스타렉스를 먼저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스타렉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저히 불합리하다. ② 이러한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은 D와 피고에게 각 50%씩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책임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선행사건 확정판결은 피고 주장의 사고 경위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스타렉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D의 카니발이 스타렉스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후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책임비율을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 주장의 사고 경위가 인정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대부분 선행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로서 선행사건 원심에서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을 이유로 책임비율을 D 및 피고 각 50%로 판단한 원심은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카니발을 운전한 D에게만 책임이 있을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